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인력 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 개 이내)	1. 2. 3.				

「항로표지법」 제4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항로표지 관련 교육·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